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4가단1010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남지혜, 방인석, 유병일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3.

주 문

-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20. 3.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889,517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3,889,5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사 조대현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벽돌조 경사슬래브 위 시멘트 기와지붕 2층 다세대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벽돌조

면 적 : 57.9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 225㎡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25분의 39.56

- 이 상 -

별지2

청 구 원 인

1.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소외 C이 소외 주식회사 D(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과 사이에 체결된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채무보증을 담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증권을 피보험자에게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아 래

보험계약체결일: 2014. 12. 31.

증권번호: E

보험가입금액: 금17,000,000원

보험가입기간: 2014. 12. 31.부터 2019. 12. 31.까지

보증내용: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2. 보증보험계약 내용 및 지연손해금의 약정

위 보증보험계약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

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원고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후부터는 연 12%입니다.

3. 보험금청구 및 지급 등

가. 그 후 보험계약자인 소외 C은 피보험자와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2017. 9. 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피보험자는 원고 발행의 위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3. 13. 피보험자에 대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8,216,657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등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11981호로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9.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8,430,063원

2. 위 1항 금액 중 금8,216,657원에 대하여 2018년 07월 01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9.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60,000원

(내역 : 송달료 56,400원, 인지액 3,600원)

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라.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금12,805,067원(=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급보험금잔액8,216,657원 +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18. 3. 14.부터 2024. 1. 5.까지의 미수이자4,295,843 + 채권보전비용등미수금292,567원, 2024. 1. 5.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4. 사해행위

가. 재산의 상속 및 협의분할

소외 C의 부친인 소외 망 F의 소유였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이 위 망인의 2020. 1. 1. 사망으로 인하여 모친인 피고 B, 자녀들인 소외 C, G에게 각 공동으로 상속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20. 3. 18.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C의 상속지분인 7분의 2지분을 피고 B에게 귀속하게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3. 18.자 접수 제66708호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일인 2019. 12. 18.이 법률행위일입니다.

다. 사해행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소외 C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11981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결정의 확정으로 원고의 구상채권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외 C의 부친인 망 F의 2020. 1. 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었으나, 위 상속인들은 2020. 3. 18.자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소외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7분의 2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무자인 소외 C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위 계약에 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행위는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모친인 피고 B은 약의의 수익자라 할 것입니다.

라. 이에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합니다.

5. 원상회복방법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소외 주식회사 H의 2018. 7.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 3. 1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동일 면적에 관한 2023. 1. 1.자 공동주택가격 117,000,000원에서 말소된 소외 주식회사 H의 2018. 7.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으로 추정되는 금20,000,000원(채권최고액합계금24,000,000원 중 담보비율 120%감안)을 공제한 잔액 금97,000,000원(117,000,000 - 20,000,000) 중 소외 C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27,714,285원($97,000,000 \times 2/7$)이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구상채권액 보다 다액입니다(추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피담보채무액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따라서 소외 C와 피고 B 사이의 2020. 3. 18.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C의 7분의 2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원

고의 소외 C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원금에 해당하는 금 12,805,067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가액 배상금 12,805,0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추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결 론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벽돌조 경사슬래브 위 시멘트 기와지붕 2층 다세대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벽돌조

면 적 : 57.9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 225㎡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25분의 39.56

- 이 상 -

변경된 청구원인

1. 재산의 상속 및 협의분할

가. 소외 C의 부친인 소외 망 F의 소유였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이 위 망인의 2020. 1. 1. 사망으로 인하여 모친인 피고 B, 자녀인 소외 C에게 각 공동으로 상속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20. 3. 17.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C의 상속지분인 5분의 2지분을 피고 B에게 귀속하게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3. 18.자 접수 제66708호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일인 2020. 3. 17.이 법률행위일입니다.

2. 가액배상청구금액의 확정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금13,889,517원(=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급보험금잔액 8,216,657원 +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18. 3. 14.부터 2024. 1. 5.까지

의 미수이자 4,401,193 + 채권보전비용등미수금1,271,667원, 2024. 2. 26..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동일 면적에 관한 2023. 1. 1.자 공공주택가격 117,000,000원에서 말소된 소외 주식회사 H의 2018. 7.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인 19,180,449원을 공제한 잔액 금97,819,551원(117,000,000-19,180,449) 중 소외 C의 지분에 해당하는 39,127,820원(97,819,551×2/5)이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구상채권액 보다 다액입니다.

다. 따라서 소외 C과 피고 B 사이의 2020. 3. 17.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C의 5분의 2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금13,889,517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금13,889,5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나머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은 그대로 원용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벽돌조 경사슬래브 위 시멘트 기와지붕 2층 다세대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벽돌조

면 적 : 57.9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 225㎡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25분의 39.56

- 이 상 -

